22.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
■ 사업개요

○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, 소상 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편입 촉진

■ 지원대상

-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49조의2에 따른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*
 - *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(소상공인의 범위)
- 지원규모 : 약 39,600명 (예산 148억원)

■ 지원내용

○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간 지원

< 등급별 보험료 지원 현황 >

(단위 : 원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
기준보수액	1,820,000	2,080,000	2,340,000	2,600,000	2,860,000	3,120,000	3,380,000
월 보험료	40,950	46,800	52,650	58,500	64,350	70,200	76,050
지원비율	80%		60%		50%		
지원액	32,760	37,440	31,590	35,100	32,175	35,100	38,025

■ 처리절차

사업공고	신청접수	선정평가 및 안내	소상공인 지원
′24.12.30.	'25.1.2일~	'25.1월~	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원

■ 신청·접수

-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
 - 근로복지공단 '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'(total.comwel.or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(회원가입)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
-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
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'소상공인24'(sbiz24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(회원 가입) 후 '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을 검색하여 신청